

윤리강령 및 전문가 행위기준

서문

CFA 협회 윤리강령 및 전문가행위기준(Code & Standards; 이하 강령 및 기준)은 CFA 협회가 지닌 가치의 근본이며, 사회의 궁극적 혜택을 위한 윤리교육, 그리고 전문가 수월성에 대한 최고의 표준을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전문가 집단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협회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은 금융시장과 투자 전문가 집단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다. 1960년에 제정된 이후, 강령 및 기준은 회원들의 완전성을 촉진해 왔으며 업무기능, 문화적 차이, 그리고 국가별 법률 및 규정과 관계없이 글로벌 투자 전문가 집단의 윤리수준을 측정하는 모형으로 공헌해왔다. CFA 협회의 모든 회원(CFA 자격 보유자를 포함)과 CFA 응시생들은 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에 대해 고용주에게도 알릴 것을 장려한다. 기준위반은 CFA 협회에 의한 처벌을 가져올 수 있는바, 처벌에 따라 회원자격, CFA 프로그램 응시자격 및 CFA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윤리강령

CFA 자격 보유자를 포함한 CFA 협회 회원들과 CFA 응시생들(이하 “회원 및 응시생들”로 칭함)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투자다중, 고객, 잠재고객, 고용주, 종업원, 투자 전문가 집단의 동료 및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타 참여자들에게 완전성, 전문적 경쟁력, 근면, 존경 및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
- 자신의 개인적 이해보다 투자 전문가 집단의 완전성 및 고객의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
- 투자분석, 투자추천 및 투자행위를 수행하거나 기타 전문가적 행위에 중사함에 있어서 합리적 주의를 기울이고 독립적인 전문가 판단을 실행해야 한다.
- 자기자신 및 전문가집단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문가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 사회의 궁극적인 혜택을 위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완전성과 생존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
- 전문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하며 다른 투자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 행위기준

I. 전문가정신

- A. 법규의 이해와 준수.** 회원과 응시생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행위를 지배하는 정부, 규제기관, 면허 발급기관 혹은 전문가 협회가 정한 관련 법률, 규칙, 규정(CFA 협회의 윤리강령 및 행위 기준을 포함)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률, 규칙, 규정에 대한 위반을 알면서도 가담하거나 도와서는 안되며, 일체의 위반 행위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 B. 독립성과 객관성.** 회원과 응시생들은 전문가 행위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주의와 판단을 다해야 한다.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되는 어떠한 선물, 편익, 보상 혹은 보답 등을 제안하거나 간청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된다.

- C.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허위진술)의 금지.** 회원과 응시생들은 투자분석, 추천, 투자행위 혹은 기타 전문가행위와 관련하여 고의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 D. 불성실행위 금지.** 회원과 응시생들은 부정, 사기, 속임수 등이 연루된 직무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되며 자신들의 전문가적 명성, 완전성, 혹은 전문적 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II. 자본시장의 완전성

- A. 중요한 미공개 정보.** 투자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소지한 회원과 응시생들은 이를 활용하여 투자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B. 시장조작.** 회원과 응시생들은 시장참여자들을 오도할 목적으로 가격을 왜곡하거나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III. 고객에 대한 의무

- A. 고객에 대한 충성의무.** 회원과 응시생은 고객에 대한 충성의무가 있으며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회원과 응시생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고객의 이익을 자신이나 회사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
- B. 차별금지.** 회원과 응시생들은 투자분석의 제공, 투자추천, 투자행위 및 기타 전문가적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야 한다.
- C. 투자의 적합성.**
1. 회원과 응시생들은 고객과의 자문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a. 투자추천 및 투자행위를 하기 전에 고객 혹은 잠재고객의 투자경험, 위험과 수익률 목적, 그리고 재무적 제약조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사,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
 - b. 투자추천 및 투자행위를 하기 전에 그 투자 대상이 고객의 재정상황에 적절한지 고객의 서면상 목적, 지시사항 및 제약조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 c. 고객의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회원과 응시생들이 특정한 지시사항, 전략, 혹은 투자스타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에 명시된 목적과 제약조건에 부합되는 투자추천과 투자행위만을 수행해야 한다.
- D. 투자성과 제시.** 투자성과 정보를 제공할 때, 회원과 응시생은 이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E. 고객기밀보호.** 회원과 응시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과거 및 잠재고객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1. 정보가 고객입장에서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2.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될 경우
 3. 고객 혹은 잠재고객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허용한 경우

IV. 고용주에 대한 의무

- A. 충성의무.** 회원과 응시생들은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자신들의 실무역량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주의 우선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고용주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B. 추가보상약정.** 회원과 응시생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고용주의 이해와 경합하거나 이해상충을 야기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선물, 편의, 보상, 보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C. 관리자 책임.** 회원과 응시생은 그들의 감독과 권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준거법률, 규칙, 규정, 그리고 본 강령 및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한다.

V. 투자분석, 추천 및 투자행위

- A. 주의의무와 합리적 근거.**
- 회원 및 응시생들은;
1. 투자대상을 분석하고 투자추천을 하며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독립성 및 철저함을 실행해야 한다.
 2. 모든 투자분석, 추천 및 투자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지녀야 한다.
- B.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의사소통.** 회원과 응시생은;
1. 투자대상의 분석과 종목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사용된 투자과정의 기본형식과 일반원칙을 공시하고 그러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동사항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2. 투자이사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과 한계를 고객과 잠재고객에게 공시해야 한다.
 3. 자신들의 투자분석, 추천 및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고객 및 잠재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들 요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4. 투자분석과 추천을 제시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야 한다.
- C. 기록보존.** 회원과 응시생들은 고객 및 잠재고객과 관련된 투자분석, 투자추천, 투자행위, 기타 투자관련 의사소통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기록을 개발하고 보존해야 한다.

VI. 이해상충

- A. 이해상충의 공개.** 회원과 응시생들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손상시키거나 고객, 잠재고객,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각자의 의무를 방해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모든 사안들을 충분히 공정하게 공시해야 한다. 그러한 공시가 눈에 뵈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표현되며 관련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B. 거래의 우선순위.** 고객과 고용주를 위한 투자거래가 회원 및 응시생이 수혜자가 되는 거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 C. 추천 수수료.** 회원과 응시생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추천의 대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상, 대가 및 혜택에 대하여 그들의 고용주, 고객 및 잠재고객에게 적절하게 공시해야 한다.

VII. 회원 및 응시생으로서의 책임

- A. 회원과 응시생의 CFA 프로그램 관련 행위.** 회원과 응시생은 CFA 협회와 CFA 자격의 명성 및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CFA 협회 프로그램의 완전성, 효력 및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B. CFA 협회, CFA 자격 및 CFA 프로그램에 대한 인용.** 회원과 응시생은 CFA 협회, CFA 협회 회원자격, CFA 자격, 혹은 CFA 프로그램응시 등을 인용할 경우 CFA 협회의 회원자격, CFA 자격보유 및 CFA 프로그램에 대한 응시가 지니는 의미를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

CFA 협회 강령 및 규범의 한국어본과 영어본의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